

「군포도시공사 자금운영위원회 운영내규」 일부개정내규를
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 국



2024년 2월 13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88 호

군포도시공사 자금운영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자금운영위원회 운영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(구성 등) 제4조 제3항 중 “경영시설본부장”을 “경영기획실장”으
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제5조 제2항 중 “경영지원부장”을 “호선을 통해
선정된 위원”으로 한다.

제9조(간사) 제9조 제1항 중 “경영지원부”을 “경영기획실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강 승 구
	직 위 성 명	재 무 회 계 팀 장 최 중 환
	담당자 성명 (전 화)	이 영 윤 (3 9 0 - 7 6 1 9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 위원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, 선임직 위원은 금융, 경제, 법률 전문가 중 사장이 선임한다. ③ 위원장은 <u>경영시설본부장</u>이 담당한다.	제4조(구성 등) ① ----- ----- -----. ② ----- ----- -----. ③ ----- <u>경영기획실장</u>이 ----- -----.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.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<u>경영지원부장</u>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	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 ----- -----. ② ----- ----- <u>호선을 통해 선정된 위원</u>이----- -----.
제9조(간사)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<u>경영지원부</u> 자금 담당이 된다.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며,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.	제5조(간사) ① ----- ----- ----- <u>경영기획실</u>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